

8. 消防法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034號 1990. 6. 29 公布.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허가를”을 “허가(건축법 제8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중 “의료원”을 “의료기관”으로, “600평방미터”를 “600제곱미터”로 하고, 동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하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본문중 “학예전시관·사업장”을 “학예전시관·강습소·사업장”으로, “1천평방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동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하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4조제1항제1호 다목 본문중 “1천800평방미터”를 “1천800제곱미터”로 하고, 동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하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4조제1항제1호 라목 본문중 “500평방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하고, 동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하층(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지하차고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중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4조제1항제2호중 “제1호 각목”을 “제1호 각목 및 제1호의2”로 하고, “동호가목 내지 라목”을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및 제1호의2”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천평방미터”를 “3천제곱미터”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증 “복합건축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을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인 것과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당해 특수장소의 관리 또는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직원(관리 또는 감독자의 직위의 직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의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증 “경력이 있거나, 청원

소방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7호증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자격”을 “위험물취급기능장 또는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의 자격”으로, “보안감독자로”를 “위험물취급주임으로”로 한다.

3의2. 의용소방대원 또는 청원소방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소방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당해 특수장소의 관리 또는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제10조제2항증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그 계획에 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증 “의료원”을 “의료기

관”으로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대중음식점(지하층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및 유홍음식점

제11조제2항제5호중 “침구류(시트카바 및 매트레스에 한한다)”를 “침구류(시트카바 및 매트레스에 한하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침구류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고”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품의 탄화면적(버너의 불꽃을 접하여 연소하는 때부터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후 연소상태가 그칠 때까지 탄화한 면적을 말한다)은 50센티미터 이내

4. 물품의 탄화길이(버너의 불꽃을 접하여 연소하는 때부터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후 연소상태가 그칠 때까지 탄화한 길이를 말한다)는 20센티미터 이내

제17조제1호 나목중 “특수가연물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킬로그램 이상의 가연성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것”을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 가스·고압가스안전관리

법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중 가연성 가스·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이하 “가연성 가스”라 한다)를 40킬로그램 이상(도시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가스의 경우에는 월 사용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저장·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 제3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제17조제10호 및 제11호 가목·나목중 “의료원”을 각각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11호 다목중 “유기장 및 시장”을 “유기장·시장 및 공중목욕탕”으로 한다.

제17조제13호의 표 가목 및 나목중 “(또는 대형발광유도표지)”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 다목중 “전문음식점·다방”을 “다방”으로 하며, 동목중 “(또는 중형발광유도표지)”를 삭제하고, 동표 라목중 “(또는 소형발광유도표지)”를 삭제하며, 동표마목중 “소형발광유도표지 또는 축광유도표지”를 “피난구축광유도표지 및 통로축광유도표지”로 하고, 동표마목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제14호의 표 가목의 소방대상물란 중 “2만평방미터”를 “2만제곱미터”로, “1만5천평방미터”를 “1만5천제곱미터”로 하고, 동목의 소화용수설비란 중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의2”를 “건축법 제22조의 2”로 한다.

제17조제17호 본문중 “700평방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하고, 동호 가목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호나목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킬로그램 이상의 가연성 가스를”을 “가연성 가스를 40킬로그램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라목(종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동주택으로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라.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사업장·영화 및 텔레비전촬영소

에 한한다)로서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제18조제9호 가목중 “4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강습소 및 4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동조 제10호의 표 가목중 “(또는 대형발광유도표지)”를, 동표 나목 중 “(또는 중형발광유도표지)”를 동표 다목중 “(또는 소형발광유도표지)”를 각각 삭제하며, 동표라목중 “소형발광유도표지 또는 축광유도표지”를 “피난구축광유도표지 및 통로축광유도표지”로 하고, 동표라목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제1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교 지하층에 있어서는 제17조제17호 본문중 “150제곱미터”를 “700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제1호나목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킬로그램 이상의 가연성 가스를”을 “가연성 가스를

40킬로그램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4호 가목중 “제차”를 “모든 차”로, “200평방미터”를 “200제곱미터”로, “500평방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하며, 동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강기 등의 기계장치에 의하여 차량을 주차시키는 구조의 것에 있어서는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제1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중형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은 지하층·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층에, 피난구축광유도표지 및 통로축광유도 표지는 기타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층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제1호 나목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중 40킬로그램 이상의 가연성가스를”을 “가연성가스를

40킬로그램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6호 중 “(또는 대형발광유도표지)”를 삭제하며,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형피난구유도등의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제8호중 “700평방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주된 용도”를 “주된 용도(이 경우 용도 구분은 제1종장소·제2종장소 또는 제3종장소로 한다)”로 한다. 제2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내무부령이 정하는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제3호중 “소방펌프자동차·이동식 중형소방펌프”를 “이동식 중형소방펌프”로 하고, 동조 제5호중 “구조대 및 유도등”을 “구조대·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조 제11호중 “관창”을 “관창(방수층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

13. 소방펌프자동차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법 제42조의4”를 “법 제42조의6”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법 제42조의7 제2항”을 “법 제42조의9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하수급분은 포함한다”를 “하수급분은 포함하며, 소방설비공사업을 양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는 양도·양수 또는 합병전의 공급가액을 합산한다”로 한다.

제28조의2 중 “법 제42조의9 제1항”을 “법 제42조의11 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의3 중 “법 제42조의11 제2항”을 “법 제42조의13 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의4 제1항 중 “법 제42조의12 제1항”을 “법 제42조의14 제1항”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설비기사가 당해사업체로부터 퇴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의4 제2항 본문 중 “법 제42조의12 제4항”을 “법 제42조의14 제4항”으로 하고, 동항 제1호 중 “법 제42조의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을 “법 제42조의7 제1항 제1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가 퇴직신고를 한 때

제9장의 제목 “구급업무”를 “구급 및 구조업무”로 하고, 제9장에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구조대의 편성) ①법 제70조의1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의 편성기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소방력기준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②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인명구조업무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자 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제49조의3(구조활동의 지원요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기타 위급한 상태하에서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제4호 중 “법 제42조의12 제1항”을 “법 제42조의14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위험물 취급자

제63조 중 “법 제34조.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42조의2. 법 제42조의3. 법 제42조의6. 법 제42조의7 및 법 제42조의12”를 “법 제34조. 법 제34조의2.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40조제1항. 법 제42조의2. 법 제42조의3. 법 제42조의5. 법 제42조의8. 법 제42조의9. 법 제42조의14 및 법 제42조의16 및 법 제70조의12”로 한다.

[별표 1]의 제1종장소의 용도별란중 “의료원”을 “의료기관”으로 하고, 비고란중 “전문음식점·유홍음식점”을 “유홍음식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종장소의 강습소의 비고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학원,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미용체조장 등

[별표 5]의 소방시설공사업 제1종(기계분야)의 기술능력란중 “2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하고, 공사실적란중 “1억2천만원”을 “6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동표의 소방시설공사업 제2종(전기분야)의 기술능력란 중 “2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공사실적란중 “8천만원 이상”을 “4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동표의 소방시설정비업 제1종(기계분야)의 기술능력란중 “소방설비기사 2인 이상”을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으로, 시설 및 장비란 중 “사무실(전용면적 33m² 이상)”을 “시설: 사무실(전용면적 33m² 이상)”으로 하고, 동표의 소방시설정비업 제2종(전기분야)의 기술능력란중

“소방설비기사 2인 이상”을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제25조제5호·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화관리자의 자격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청원소방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제8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改正理由 ▷

消防法의 改正(1989. 12. 30 法律 第4155號)으로 消防本部 또는 消防署에 人命救助隊를 編成·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消防設備工事業免許 및 消防施設設置基準에 있어서 過度한 規制事項을 緩和하는 등 現行 規定의 未備點을 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 가. 共同防火管理를 하여야 할 대상을 5層 이상의 複合建築物로 하고 있던 것을 그밖의 大型建築物의 火災豫防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延面積 3千제곱미터 이상 複合建築物과 市場을 共同防火管理의 대상으로 추가함(令 第7條).
- 나. 特殊場所의 防火管理者는 매년 消防計劃을 작성하여 관할 消防署長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民願簡素化를 위하여 이를 작성하되 제출하지는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작성된 計劃에 의하여 防火管理業務를 수행하도록 함(令 第10條 第2項).
- 다. 醫療機關·飲食店·事業場 등의 用途로 사용하는 建築物로서 11層 이상의 層 중 防火區劃이 되지 아니한 부분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스프링쿨러設備를 設置하도록 하던 것을, 高層建築物의 철저한 火災豫防을 위하여 11層 이상의 層은 防火區劃에 관계없이 모두 스프링쿨러設備를 設置하도록 하고 共同住宅의 경우에도 16層 이상의 層은 스프링쿨러設備를 設置하도록 함(令 第17條第3號 및 第18條第3號).
- 라. 消防本部長 또는 消防署長이 編成·운영하는 人命救助隊의 編成人員 및 裝備의 基準은 内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救助隊員은 消防公務員으로서 所定의 教育을 받은 者 중에서 任命하도록 함(令 第49條의2 및 第49條의3).
- 마. 消防設備工事業 免許基準中 消防設備技士는 2人 이상 採用하도록 하던 것을 1人 이상 採用하도록 하고, 消防設備工事實績은 第1種 工事業의 경우에는 1億 2千萬원에서 6千萬원으로, 第2種 工事業의 경우에는 8千萬원에서 4千萬원으로 그 基準을 緩和함(令 別表5).

〈법제처 제공〉